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783 |
|----------|-----|

2021. 7. 9.(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심기보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1년 6월 30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2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7월 9일

-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심기보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주화운동”의 정의(안 제2조)
- 기념사업(안 제4조)
 -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및 기념행사
 - 충청북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
-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또는 교육, 연구 기관 등에 사업비 지원 (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제정 목적이 있으며,
- 제주 4.3 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과 충청북도는 관련이 없다는 인식이 있으나 6.10 항쟁 등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주화운동에 충청북도 또한 동참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며,
- 충청북도 내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여 민주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하는 것에 이견이 없음. 특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4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번호 | 제 783 호 |
| 의 결 연 월 일 | 년 월 일 (제392회) |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 | |
|-------|--------------|
| 발 의 자 | 심기보 의원 등 7인 |
| 발의연월일 | 2021년 6월 30일 |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기보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783 |
|----------|-----|

발의연월일 : 2021년 6월 30일

발 의 자 : 심기보, 임영은, 이옥규,
박상돈, 오영탁, 육미선,
김영주

1. 제정이유

-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주화운동”의 정의(안 제2조)
- 기념사업(안 제4조)
 -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및 기념행사
 - 충청북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
-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또는 교육, 연구기관 등에 사업비 지원 (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공동체협력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라. 입법예고 : 2021. 6. 16. ~ 2021. 6. 26.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충청북도에서 일어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 이념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및 기념행사

2. 충청북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념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또는 교육, 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등)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 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